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471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정진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0호), 정지권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06호)을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20.4.23.)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정진철 의원 외 9명, 정지권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시장과 시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근무 투입전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운영자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음주측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을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시장은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추가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 나.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전염병 발생시 확산·차단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 신설함(안 제4조제4항)
- 다.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라. 대중교통 운전원들의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운영자는 음주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하여 실질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 마. 시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추가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제8조 중 “시설”을 “대중교통시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중교통보건위생)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항 1 ~ 10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항 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u></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p>
<p>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 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u>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u></p>
<p>제8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p>	<p>제8조(대중교통안전) ----- ----- -----</p>

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 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보건위생)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시설 -----

-----.

제9조(대중교통보건위생)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